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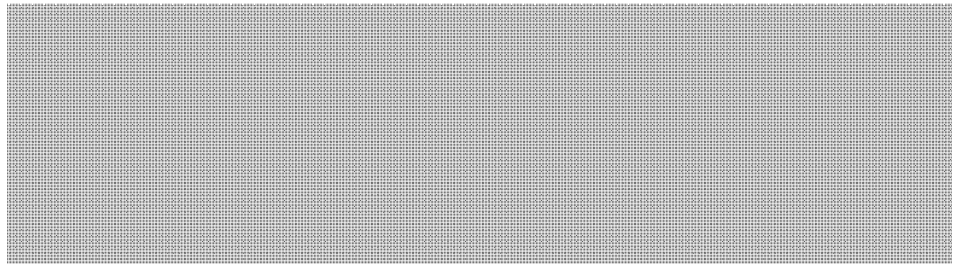


: 2018-04-2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202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피 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1997. 4. 2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0. 12. 12.부터 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소속 차량검사수리관으로 근무하다, 2014. 8. 18.부터 군수지원단 본부지원과 소속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7. 17:05경 부대 내에서 흡연을 하며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7:2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 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18:40경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코일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상이로 공무상병 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9. 30. 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혈압관리가 되고 있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전에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관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7, 9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관련 사항

가) 원고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원고는 1997. 4. 28.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후 단 한 번도 장비탄약관리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군수지원단장은 []군수지원단 본부지원과 소속 장비탄약담당관 []가 2014. 9. 1.부터 2015. 1. 9.까지 파견교육을 가게 되자 2014. 8. 18.경 원고를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부터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서 화력장비, 일반장비, 기동장비, 통신장비와 24종 38,000발의 탄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의 2016년 초과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23:30	24:18	25:47	5:09	22:04	24:12	23:02	29:04	19:32	17:08	13:33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의 키는 173cm이고, 평상시 체중은 69 내지 73kg이었으며, 2014. 4. 18. 건강검진 당시에도 체중이 72kg이었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의 2014. 10. 30.자 진료 기록에는 '3개월 동안 체중이 72kg에서 60kg으로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아대학교병원의 2014. 12. 17.자 진료기록에는 '체중 57k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약 15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해왔다.

다)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검진 결과	종합 소견
----	-------	-------



2006년	혈압: 최고 125, 최저 85mmHg 총콜레스테롤: 206mg/dL	-
2008년	혈압: 최고 135, 최저 85mmHg 총콜레스테롤: 204mg/dL	-
2009년	혈압: 최고 135, 최저 75mmHg 총콜레스테롤: 181g/dL HDL-콜레스테롤: 50g/dL LDL-콜레스테롤: 109g/dL	-
2010년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총콜레스테롤: 205g/dL HDL-콜레스테롤: 59g/dL LDL-콜레스테롤: 107g/dL	주기적 혈압측정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2011년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총콜레스테롤: 143g/dL HDL-콜레스테롤: 47g/dL LDL-콜레스테롤: 63g/dL	간질환의심. 콜레스테롤관리 요함. 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 금주, 금연, 규칙적운동) 요함.
2012년	혈압: 최고 120, 최저 90mmHg 총콜레스테롤: 162g/dL HDL-콜레스테롤: 48g/dL	간기능관리 요함. 콜레스테롤관리 요함. 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 금주, 금연, 규칙적운동) 요함.
2013년	혈압: 최고 130, 최저 80mmHg 총콜레스테롤: 158g/dL HDL-콜레스테롤: 34g/dL LDL-콜레스테롤: 56g/dL	간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혈압관리 요함(주기적 혈압측정, 금주, 금연, 규칙적운동).
2014년	혈압: 최고 135, 최저 80mmHg 총콜레스테롤: 141g/dL HDL-콜레스테롤: 31g/dL LDL-콜레스테롤: 92g/dL	고혈압 전단계.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흡연과 음주를 삼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이 낮아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음. 운동 요함. 지질이상에 대한 상담 필요.

라) 원고는 급격한 체중감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의 2014. 10. 30.자 진료기록에는 '식사량이 조금 줄었지만 식욕은 있었다. 그러나 최근 1주일 전부터 식욕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1. 4.자 진료기록에는 '임관 이후 늘 행정직만 수행해왔는데 두 달 전부터 장비 탄약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3명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내가 가면서부터 위 업무를 나 혼자 수행하게 되었다. 총기가 단 한 개라도 없어지면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부담스럽고, 총기 개수를 외워야 해 스트레



스를 받았다. 장비탄약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식사량이 줄어들었다. 군 인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지는 않다. 2년만 참으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군복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내가 우리집의 얼굴이기 때문에 늘 잘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6. 5. 실시된 체력검정을 팔굽혀펴기 49회(2급), 윗몸일으키기 49회(3급), 3km 달리기 15분 17초(2급)의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3) [redacted] 군수지원단 소속 동료들의 진술

가) [redacted]는 '보통 장비탄약담당관 업무 인수인계는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고에게는 3개월이 아닌 3주 동안만 인수인계를 하였다. 원고에게 장비탄약담당관 업무를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심도있는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을 인수인계하였다. 원고는 인수인계 1주차 때는 못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전임 장비담당관이 원고를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redacted] 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소속 군수담당관 [redacted]은 '원고가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된 후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업무가 어렵다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원고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기 약 2주 전 목욕탕에서 원고를 만났는데 뼈쩍 말라 있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redacted] 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소속 주임원사 [redacted]은 '원고가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된 후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업무연계중단과 업무수행절차 미숙지로 힘들어 했고,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 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소속 8급 군무원 []는 '원고가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된 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야근 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 군수지원단 본부지원과 소속 인사행정부서관 []은 '원고가 인수인계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고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빨리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후임자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고혈압과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원고에게는 명백한 출혈 원인으로 뇌동맥류 기왕증이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 등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최고 135, 최저 80mmHg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평소 혈압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공무상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혈관이 터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흡연도 주요한 출혈의 원인이나 직접적·단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1)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원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인 뇌동맥류와 흡연력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공무수행과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고혈압 등이 의심되던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전에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수행과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임관 이후 단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관리업무를 급작스럽게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비교적 형식적인 인수인계만을 받았다. 원고는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전임 장비탄약담당관 [REDACTED]에게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② 원고가 임관 이후 수행해 왔던 업무와는 달리 장비탄약관리업무의 경우 총



기나 탄약 분실 등 업무상 실수가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원고가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된 이후 체중이 72kg에서 60kg으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오직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만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경제적 궁핍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일정 부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REDACTED]나 동료들에게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일도 차츰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일정 부분 적응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동료들에게 빨리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일정 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4. 11. 4.에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바, 원고가 장비탄약담당관 업무에 일정 부분 적응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뇌지주막하출혈 발생 당시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장비탄약담당관 대리근무자로 임명되기 전까지 걱정 체중을 유지하였으며, 2014. 6. 5. 실시된 체력검정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2) 원고의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전에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고혈압 등과 같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직무수행 못지않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경우는 그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의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촉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